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
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 실태조사 항목에 근로여건,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조사·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,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내용 관련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하여 조사내용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(안 제3조제3항 신설)
- 나. 자료조사,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의 조사 방법(안 제3조제4항 신설),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(안 제3조제5항 신설),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제3조제6항 신설), 그 외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(안 제3조제7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”를 “조사”로 한다.
제3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복지법인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(이하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라 한다)의 고용 형태,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사항
3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
4.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 준수율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

④ 실태조사는 자료조사,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

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, 법인·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<u>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</u> 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(이하 “사회복지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17., 2022. 6. 14.>	제3조(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) ① ----- ----- -- <u>조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실태조사의 시기, 대상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/u>	③ <u>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1. 사회복지법인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(이하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라 한다)의 고용형태,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2.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사항

3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

4.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 준수율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

④ 실태조사는 자료조사,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, 법인·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
것 외에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
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
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71